

『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8년 8월 18일

나. 발 의 자 : 정근수 · 권기만 · 길윤옥 · 김상조
김익수 · 박광석 · 박교상 · 박순이
임춘구 · 장세만 · 전인철(11명)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8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8월 26일

제1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정 근 수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는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 번째 이상 출생아로 함(안 제3조)
- 건강보험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, 시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, 보험계약은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승낙일로 함(안 제4조)

-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고,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, 보험기관의 보험계약 확인 후 보험료 지급 (안 제5조 및 제6조)
- 신생아 또는 보호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, 신생아 사망시 지원자격 상실(안 제7조)
- 보험기관 선정은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공모 선정 (안 제8조)
- 지원대상자의 사망 및 타시군 전출 등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만기 환급금은 구미시에 귀속(안 제9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」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과 중 현

○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

- 출산장려 및 건강하고 활기찬 복지사회를 구현코자 관내에서 출생한 셋째아 이상 신생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제정내용은

- 조례를 총 12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, 용어정의를 규정하고
- 안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는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 번째 이상 출생아로 규정하였으며

- 안 제4조 건강보험 지원기준은 예산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, 시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보호자로 하되 보험계약은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승낙일로 하였음
- 안 제5조 및 제6조 지원신청과 절차는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읍·면·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,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보험기관의 보험계약 확인후 청구서에 의거 보험료를 지급토록 하였음
- 안 제7조 및 제8조 지원자격 상실은 신생아 또는 보호자의 타지역 전출과 신생아 사망시로 규정하였으며, 보험기관의 선정은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토록 규정하였음
- 안 제9조 보험료 환수 및 중지는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타 시·군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료 지원중지 및 계약을 해지하며, 중도해지 및 만기 환급금은 구미시에 귀속토록 규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시행 초기에는 지원예산이 많이 소요되고, 또한 단기간에 기대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,
- 중·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신생아에 대한 폭넓은 안정적 보장으로 다자녀가구의 출산, 양육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이라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